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92

발의연월일: 2021. 6. 29.

발 의 자:양금희·전봉민·김형동

윤영석 • 이주환 • 한무경

윤한홍 · 서일준 · 윤재옥

권명호 · 홍석준 · 백종헌

강대식 • 지성호 • 김기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의 성과가 뛰어난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육성하여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이러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는 2017년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입된 이후 2년 간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 로 시행하여 13개 사(社)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한 바 있었음.

그리고 2019년에는 지정 대상 분야를 제조업 전 분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0년 서비스업 분야로도 확대해, 4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123개 사(社)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 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 음.

이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으로써, 기업부설연 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5(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
	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
	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
	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